

산재보험의 법률상담(3)

박 필 수 우리 협회 고문

Q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이 심부전증으로 판명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위치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이 심부전증으로 판명된 재해에 있어서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 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다 것으로 위 망인의 사인인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83.12.27, 82 누 455).

Q 재해 당일 아침 개인적 사유로 언쟁을 한 후 흥분된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대기근무중 혈압이 상승하여 두개골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업무외)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라 함은 그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할것인 바, 망인의 평소 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는데 일요일인 재해일 아침에 체무관계로 심한 언쟁을 한 후 흥분된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대기근무중 혈압이 260/110, 230/130까지 상승하여 두개골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의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일어났다거나 업무의 과중 또는 업무수행중의 정신적인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일어났다는 등의 업무기인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법 1984.8.2, 83 구 1136).

Q 퇴근하여 취침중 호흡장애를 느끼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고혈압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애 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사망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대법 1986. 9. 23. 86 누 176).

Q 건설현장소장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거울철 동안의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줄어들어 당초 예상된 공사완료일까지 이를 마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던 끝에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기고 마침내 뇌졸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89. 2. 9. 88 구 6056).

Q 철근상차작업반장이 회사에 출근하여 야간작업을 위해 작업현장에 있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심폐정지(사인미상)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사용자의 사업장시설내에서 대기시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사적인 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이 불명인 경우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근로자가 종사하던 경영시설이나 환경 등이 사망사고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음을 경험적이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연성이 입증되었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취지에서 망인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야간 작업을 위해 작업현장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 도중 외견상 특이한 상황없이 심폐정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망사는 작업장에서 작업대기를 하며 휴식을 취하다 일어난 만큼 사적인 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야간업무에 의한 과로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9. 8. 31. 89 구 3757).

Q 누적된 과로와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심장마비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 1990.2.13, 89 누 6990).

Q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기존질병인 지방심으로 인한 심장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근무 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심장쇼크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0.9.25, 90 누 2727).

Q

사출공이 공장시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외)

A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사출공인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 1990.10.23, 88 두 5037).

Q

버스운전기사가 운전업무수행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하차하여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기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업무상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 1990.11.13, 90 누 3690).

Q

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미장공이 작업 도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여 부검결과 사인이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밝혀진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미장공인 근로자가 아파트공사장에서 고된 땀방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1.1.11, 90 누 8276).

Q 경비원이 근무중 복통·전신마비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뇌출증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경비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후 다소 괴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더 악화되었고, 사망 당일 저녁식사후 곧 강도높은 노동을 집중적으로 한 결과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증에 이르고 이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곧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1.4.9, 90 누 10469).

Q 출근 도중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허혈성뇌출증으로 판명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고혈압증세가 있던 금속제조회사의 기능공인 근로자가 철선재료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 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는 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뇌출증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1.4.12, 91 누 476).

Q 집에서 TV시청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한 편이었으나 입사후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또 사망하기 이틀전에는 저혈압과

간질환의심, 전신쇠약증이 있어 15일정도 입원하여 안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즉시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사망한 것인 이상,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지나친 과로가 그 사인인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요인이 되는 다른 질환의 악화를 촉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1.7.10. 91 구 1485).

Q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인이 분명치 아닌 사망재해의 경우(업무외)

A 업무상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이 당시 과중한 업무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그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 1991.8.27, 91 누 5013).

Q 기계정비공이 회사사무실에서 아간근 무중에 대기·수면 도중 급성심장사 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업무상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 휴기를 갔다 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한 데다가 그후 2주일간은 매월 8시간씩 주간근무를 하고 그후부터 사망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의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외에 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 1991.9.10. 01 누 5433).

Q 영업사원이 사업장 밖에서 회식중 쓰 러져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사망한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 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선행사인 간경변증, 직접사인 위장정맥류 출혈 및 복막내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1. 10. 22, 91 누 4751).

Q 원인미상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사망재해의 경우(업무외)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 압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불인정은 정당하다(대법 1991. 11. 8, 91 누 3307).

Q 회사 세무담당자가 출장중 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

세무담당자의 수일간의 출장 등 종합세무감사 수감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경화증이 있던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과로가 간경화증을 악화시켜 발생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부위장관 출혈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1. 11. 8, 91 누 3727).

Q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근경색(추정)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은 회사창고에 있는 방에서 숙식하면서 창고와 야적장의 청소, 입·출고되는 콘크리트전주, 변압기, 애자, 전선 등 무거운 각종 전기공사 자재의 수령 및 상·하차작업, 위 자재를 분유하고 정리정돈하는 작업, 전기공사 현장작업과 이외에 야간에는 창고의 순찰, 출입자동제 등 야간경비근무를 휴일도 없이 반복수행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의 발생원인으로 업무상과로가 집중된 데다가 사망 당일에도 망치와 정으로 벽돌을 깨트리는 힘든 직업을 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 1991. 11. 8, 91 누 3741).

Q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중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파열로 졸도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운송사업체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배차받은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 파열 등으로 토헐을 하고 출도한 사건의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으로 간경변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출혈증상이 더러 있기는 하였어도 이 질환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한편 시내버스운

전이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그 운전업무 자체는 정신적·육체적 긴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그 주장과 같이 종전에 다른 여러 버스운송사업체를 전전하면서 시내버스운전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종사한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교대되는 근무와 휴무의 일자 및 그 시간대가 고르지 못하고 짧은식 시간, 숙면시간의 태부족 등 열악한 업무여건에서 축적된 피로가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운전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과로가 적어도 다른 주된 원인과 겹쳐서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근로자의 간경변증을 그 자연진행정도보다 급속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식도정맥류파열이 촉진·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 1992.5.12. 91 누 10466).

한답

“멍청하지 말고 오래 삽시다”

- 장수비결 -

- ♣ 이기력하지 말고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짊은이들에게는 꽂 안겨 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원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를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고마워요!”